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34
----------	-----

2024. 11. 27.  
행정안전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2024. 11. 4. 강남구청장(중대재해예방실)

나. 상정의결

-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2024. 11. 27.)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행정국장)

2024. 1. 27.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실태조사, 중점관리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다. 실태조사(안 제5조)

라. 중점관리대상(안 제6조)

마. 컨설팅 지원(안 제7조)

바.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가족정책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조례안 : 별첨

(2) 입법예고(2024. 10. 4.~2024. 10.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민)

가. 제정 취지 및 필요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이라 한다)이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

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1월에 제정,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적용된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2024. 1.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고 있음.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역할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실효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경영책임자이자 재해대책을 수립·집행해야 하는 구청장이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 내용

- 안 제2조는 용어 정의에 관한 것으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를 따르도록 명시하였으나, 단서 조항에서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는 법 제2조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눠 규정하면서 법 제2조의 규정을 재기재함.
- 법 제2조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제조물”,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에 대해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 [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용어

용어	정의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p>「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p> <p>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p> <p>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p> <p>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p>
중대시민재해	<p>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p> <p>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p> <p>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p> <p>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p>
공중이용시설	<p>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p> <p>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p> <p>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p> <p>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함)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p>
공중교통수단	<p>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p> <p>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p> <p>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p> <p>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p> <p>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p> <p>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p>

제조물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
종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통상적으로 정의규정에서는 헌법이나 「민법」·「형법」 등 기본법이나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같은 용어는 가능한 한 정의가 같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령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법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법령의 집행과정에서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상위법의 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집행상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법제처에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은 입법체계적으로 법률의 폐시 조례 효력의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

▪ 법제처 2015. 10. 5. 회신 15-0264 의견제시 사례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4. 2. 7. 회신 의견 14-0026 참조).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을 서산시 조례에 다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u>다만,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u>1.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u></p> <p><u>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p>

- ‘안 제3조’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등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 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

록 정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서 규정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사항에 근거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 참고로 강남구 산업재해 대상은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종사자 등 약 3100명이며 ,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상은 86개소로 각각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2조에 규정하였듯이, 이 조례안의 용어에 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규정은 되도록 단순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도록 하고, 같은 의미의 말이 반복되는 문장 등은 길고 복잡하므로 원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장을 지양하도록 하는 바, 해당 규정에 대한 수정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u>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u></p> <p>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li> <li>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li> <li>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li> <li>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li> <li>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li> <li>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li> <li>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 안 제5조는 구청장이 안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관련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조항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각종 관련 현황 파악 등의 실태조사와 유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바람직하다 하겠음.

- 안 제6조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점관리대상에서 제1항은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이며, 제2항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에 있어 구분을 지을 실익이 적은 것으로 보여 하나의 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4조와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의 용어에 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규정은 되도록 단순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도록 하고, 같은 의미의 말이 반복되는 문장 등은 길고 복잡하므로 원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장을 지양하도록 하는 바, 해당 규정에 대한 수정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 조례안에 대한

#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434

제안연월일: 2024. 11. 27.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1. 수정이유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은 입법체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정의 규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집행상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문장을 간결하게 작성하고 중대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신설하고 표창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

## 2. 수정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의 단서 삭제(안 제2조)

나.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사항 조문 수정(안 제5조)

다. 교육 및 홍보 조문 수정(안 제8조)

라. 협력체계 구성 및 표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및 제10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4조제2항제1호 중 “기본 방향”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발 방지”를 “재발방지”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을 “자료 제출을 협조”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수 있고 안전관리대회, 안전체험활동 및 안전보건교육·건강상담 등 관련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종 행사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

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다만,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1. <u>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u></p> <p>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p> <p>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p>	<p>제2조(정의) -----</p> <p>-----</p> <p>-----</p> <p>-----</p> <p><u>&lt;단서 삭제&gt;</u></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u>(원안과 같음)</u></p> <p>② -----</p>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

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생략)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  
항

4. 5. (생략)

제5조(실태조사)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단  
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  
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과 종사  
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안전관  
리대회, 안전체험활동을 할 수  
있고 안전관리대회, 안전체험활  
동 및 안전보건교육·건강상담  
등 관련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

-----.

1. -----

- 기본방향 -----

2. (원안과 같음)

3. ----- 재발방지 -

-----  
--

4. 5. (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① (원안과 같음)

② -----  
-----  
--- 자료 제출을 협조 -----  
-----.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

-----  
-----  
-----  
-----  
----- 수 있다.

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종 행사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관련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중점관리대상) ① 구청장은 구청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종사자에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에 따른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 설 또는 수단

제7조(컨설팅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안전관리대회, 안전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종 행사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34
----------	-----

제출연월일 : 2024. 11. 4.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중대재해예방실

## 1. 제안이유

2024. 1. 27.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실태조사, 중점관리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다. 실태조사(안 제5조)
- 라. 중점관리대상(안 제6조)
- 마. 컨설팅 지원(안 제7조)
- 바.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가족정책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조례안 : 별첨

(2) 입법예고(2024. 10. 4.~2024. 10.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다만, “경영책임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

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관련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중점관리대상) ① 구청장은 구청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종사자에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에 따른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7조(컨설팅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안전관리대회, 안전체험활동을 할 수 있고 안전관리대회, 안전체험활동 및 안전보건교육·건강상담 등 관련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내 중대재해 예방 활동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미만임
- 의안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내 중대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 4. 작성자

- 중대재해예방실 행정8급 조성복(02-3423-5016)